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제1장 일반회계

I . 개 요	1
1. 총 괄	1
2. 세입예산안	2
3. 세출예산안	4
4. 성과계획서	8
5. 성인지예산	9
II . 검토의견	10
[총괄]	10
1. 성과계획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10
2. 부대의견 조치결과 이행 미흡	15
3.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 분석 및 개선 노력 필요	20
[세입]	25
1. 과태료: 실제 수납 가능 범위 내의 예산 편성 필요	25
[세출]	32
1.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32
(1)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의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32
(2)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의 통합 편성·집행 필요	35

2.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37
(1) 청렴포털 기능 개선 및 이용자 친화적 기능 도입 필요	38
(2) 공공기관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필요	41
3. 종합상담창구운영: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상담인력 확보 필요	45
4. 고충민원조사활동: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사업의 효과성 재검토 및 운영 방식 개선 필요	52
5.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57
(1) 청렴컨설팅 효과의 지속성과 내재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59
(2) 심층진단·분석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61
6. 청렴교육및의식확산	63
(1)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계획의 현실화 및 구체화 필요	63
(2) 대학 청렴교육 예산 규모 조정 필요	67
(3) 학술지 발간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운영 내실화 필요	71
7.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74
(1)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근거 마련 필요 등	74
(2) 신고자 보호 교육영상 제작 예산 적정 비목 편성 필요	80

제1장 일반회계

I. 개 요

1. 총 괄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5,800만원(△6.4%) 감소한 8억 5,400만원,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7억 9,800만원(0.8%) 증가한 1,058억 8,800만원임.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세입예산안	9.1	8.5	△0.6	△6.4
○ 일반회계	9.1	8.5	△0.6	△6.4
□ 세출예산안	1,050.9	1,058.9	8.0	0.8
○ 일반회계	1,050.9	1,058.9	8.0	0.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대 세부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3.9	13.9	13.8	0.8	△0.6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33.5	33.5	39.0	5.5	16.4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67.8	67.8	74.1	6.3	9.3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	12.7	12.7	순증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	18.2	18.2	순증
종합상담창구운영	95.3	95.3	102.8	7.6	7.9
고충민원조사활동	16.0	16.0	19.0	3.0	18.7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9.8	29.8	27.4	△2.4	△8.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1	24.1	29.7	5.6	23.1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55.0	55.0	49.9	△5.1	△9.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 5,400만원
으로 2025년 대비 5,800만원(△6.4%) 감액 편성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합 계	684	912	912	854	△58	△6.4
기타재산이자수입	2	-	-	-	-	-
과태료	73	180	180	120	△60	△33.3
위약금	49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21	682	682	701	19	2.8
기타잡수입	33	50	50	33	△17	△34.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	-	-	-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과태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과태료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 대비 6,000만원(△33.3%) 감소한 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과 과오지급금 반환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에는 2025년도 예산 대비 1,900만원(2.8%) 증가한 7억 1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잡수입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 청렴연수원 숙소 사용료로 구성되며, 2026년도에는 최근 3년간('22년~'24년)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 대비 1,700만원(△34.0%) 감소한 3,300만원이 편성됨.

3.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58억 8,8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050억 9,000만원 대비 7억 9,800만원 (0.8%)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107,996	105,090	105,090	105,888	798	0.8
□ 국민권익위원회	107,996	105,090	105,090	105,888	798	0.8
○ 인건비	49,476	52,132	52,132	53,440	1,308	2.5
○ 기본경비	7,197	8,128	8,128	8,065	△63	△0.8
○ 주요사업비	51,323	44,830	44,830	44,383	△447	△1.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은 1,058억 8,800만원으로, 인건비만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25년 예산 대비 6,300만원 (△0.8%), 사업비는 2025년 예산 대비 4억 4,700만원(△1.0%) 감액 편성됨.

2) 인건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534억 4,0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521억 3,200만원 대비 13억 800만원(2.5%) 증가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49,476	52,132	52,132	53,440	1,308	2.5
□ 세목별	49,476	52,132	52,132	53,440	1,308	2.5
○ 보수(110-01)	48,616	51,339	51,339	52,608	1,269	2.5
○ 기타직보수(110-02)	599	394	394	421	27	6.9
○ 연가보상비(110-05)	262	399	399	411	12	3.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3) 기본경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80억 6,500만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6,300만원(△0.8%) 감소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총액 인건비 대상	인건비(110목)	876	1,055	1,055	1,122	67	6.4
	운영비(210목)	1,059	1,404	1,404	1,383	△21	△1.5
	직무수행경비(250목)	916	953	953	910	△43	△4.5
	민간이전(320목)	158	183	183	197	14	7.7
	소 계(A)	3,008	3,595	3,595	3,610	15	0.4
총액 인건비 비 대상	운영비(210목)	2,451	2,667	2,667	2,616	△51	△1.9
	여비(220목)	689	650	650	642	△8	△1.2
	업무추진비(240목)	362	391	391	372	△19	△4.9
	연구용역비(260목)	364	385	385	375	△10	△2.6
	보전금(310목)	99	110	110	111	1	0.9
	건설비(420목)	30	35	35	30	△5	△14.3
	유형자산(430목)	193	285	285	311	26	9.1
	무형자산(440목)	-	10	10	-	△10	순감
	소 계(B)	4,189	4,533	4,533	4,455	△78	△1.7
합 계(A+B)		7,197	8,128	8,128	8,065	△63	△0.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6억 1,0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0.4%)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4억 5,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대비 7,800만원 (△1.7%) 감소함.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443억 8,300만원
으로 2025년 예산 대비 4억 4,700만원(△1.0%) 감소함.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합 계	51,323	44,830	44,830	44,383	△447	△1.0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54	1,390	1,390	1,382	△8	△0.6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9,057	7,665	7,665	2,670	△4,995	△65.2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4,653	3,346	3,346	3,895	549	16.4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	6,784	6,784	7,412	628	9.3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	-	1,274	1,274	순증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	-	1,822	1,822	순증
반부패기술지원(ODA)	286	250	250	-	△250	순감
청렴권익국제교류	357	670	670	540	△130	△19.3
청렴권익민간협력	453	318	318	315	△3	△0.9
부패·고충제도개선	99	83	83	89	6	7.2
종합상담창구운영	11,129	9,526	9,526	10,283	757	7.9
고충민원조사활동	1,361	1,600	1,600	1,899	299	18.7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3,001	2,984	2,984	2,741	△243	△8.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11	2,411	2,411	2,967	556	23.1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1	78	78	85	7	9.0
신고지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4,175	5,500	5,500	4,994	△506	△9.2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323	206	206	217	11	5.3
청탁금지제도운영	196	166	166	170	4	2.4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193	210	210	190	△20	△9.5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77	100	100	94	△6	△6.0
행정심판운영	999	1,543	1,543	1,344	△199	△12.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를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로 설정하고, ‘국민 권익구제, 청렴가치 실현으로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1가지 전략목표(‘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 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음.

○ 프로그램 목표 내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	1	1	7	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 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I-1 국민권익증진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 성인지 예산¹⁾

- ☐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규범자문단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1개 세부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8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 청탁금지제도운영	196	166	166	170	4	2.4
청탁금지제도운영 지원	6	8	8	8	-	-

1)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II. 검토의견

[총괄]

1. 성과계획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1)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 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2)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한 ‘2024 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계획서’에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1개)-프로그램 목표(1개)-성과지표(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1개(100.0%)임.

〈전략목표 달성 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555	지표 수	1
		달성/미달성	1/0
		달성률	1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회계연도까지는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프로그램목표, 7개의 단위사업”의 성과계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2회계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프로그램목표”만을 운영하고,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2021년 이전 성과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구 분	전 략 목 표	프로그래 목 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7	6	1	-
비율(%)	-	-	100	85.7	14.3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이전 목표 및 관리과제 내용〉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부 문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I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1)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재정
	(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재정
	(3) 국민고충해소	일반재정
	(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재정
	(5) 행정심판	일반재정
	(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재정
	(7)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정 보 화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청렴권익문화확산 등 7개 단위사업비 예산현액 555억원 중 92.4%인 513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단위로 1개만 운용함으로 인해 집행률이 92.4%임에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를 기록하게 됨.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단위사업별 성과달성률을 알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의 성과달성률 또한 전혀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음.

○ 예를 들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공익신고제도운영 세부사업’ 및 ‘행정심판운영 세부사업’은 모두 집행률이 90% 미만이지만 측정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사업의 만족도 또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는 (舊)국가청렴위원회, (舊)국민고충처리위원회, (舊)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2008년 출범된 조직으로, 현재도 차관급인 3명의 부위원장이 각각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등 크게 3가지의 업무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국가청렴도(CPI)’는 국가별 부패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부패방지업무의 성과를 측정하는 용도로는 유용하나,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측정만으로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경우 기존의 성과지표를 부활시키거나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별도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 국가보훈부의 경우, 2022회계연도 이후에도 프로그램 단위 외에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성과지표 외에도 새로운 성과지표를 꾸준히 개발하여 사업별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2. 부대의견 조치결과 이행 미흡

□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은 총 14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0건을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조치 중이라고 밝힘.

□ 14건 중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7건으로, 이 중 2025년 10월 기준 보고가 완료된 건은 2건에 불과함.

○ 또한,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권익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²⁾

〈2025년도 예산안 정무위 예비심사 부대의견 조치 결과〉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결과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의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과태료 징수결정액 등 현황을 고려하여 2026년 과태료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25년) 180백만원 → ('26년) 120백만원	조치 완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해석·기준을 면밀히 검토·적용하는 등으로 권익위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할 계획임	조치 완료

2) p.36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참조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3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 등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 예산의 증대를 도모한다.	○향후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액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법정 상환기간 내(3개월) 상환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각 공공기관이 상환금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 매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장기 연체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현지점검을 통해 상환금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조치 완료
4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을 제고를 위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수납률 증가 노력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2026년 본예산 편성 협조요청 공문 발송(2025. 9. 8. 245개 지자체) - 납부기한(3개월)을 도과한 기관에 납부독려 공문 발송(총 70회) - 장기 연체기관 대상 현지점검 실시(2개 기관) - 정무위 보고 예정	조치중
5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 800만원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 운영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조치중
6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2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우리 위원회는 '24년 위원장, 부위원장(3인)에 대한 업무추진비 배정액 9,7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한 8,500만원을 '25년에 배정하였으며,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임	조치 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결과
7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용차 사용규정을 강화하고, 2025년도 국외 출장보고서를 차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용 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관용차를 운영하고 있음 ○규정상 국외출장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등재하여 대국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보고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조치 완료
8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고 통합 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향후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 간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소청·보상보험·토지 등 분야별 행정심판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통하였으며(‘25.6월, 현재 90개 기관 통합완료),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통합해 나갈 예정임	조치중
9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 제도개선 연수 사업 예산을 축소(△48백만원)하였으며, ○‘25년 말까지 수원국을 총 74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 ‘25.9월 기준 74개국·592명 외국 공직자 대상 반부패 연수 과정 실시 완료 ※ 2026회계연도 세부사업 폐지	조치 완료
10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25년도 신규사업인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의 세부 과제로 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을 추진 - ‘25.5.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명 규모의 시민상담관 위촉 - ‘25.6.부터 각급 기관의 특이민원 상담·교육	조치 완료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수요 신청을 받아 시민상담관을 배정·지원 토록 함 - 시민상담관이 각급 기관을 방문하여 '25.8월말 총 72회 상담·교육 실시 - 향후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관련 국회 보고 예정 * (용어변경) 특별민원→특이민원, 상담요 원→시민상담관	
11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세대의 수 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 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 를 증액하였는데, '초등학생 청렴 캠프 운영'은 일반용역비 증액 사 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배 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초등학생 청렴캠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전 문화·다양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초등학생 청렴캠프 교육 횟수·인원 : ('24 년) 2회·53명 → ('25년) 3회·150여명	조치 완료
1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필수사업에 해 당하나 그동안 신고자 보호조치 조치 등이 미흡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집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2024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 료에 부패·공익신고 연도별 신고자보호 실 적을 보고함 ○또한, 국회 업무 보고시 신고자 보호조치 실 적을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조치 완료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제 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 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여부를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선택하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을 개선하는 「행정심판 시행규칙」 개정 완 료('25.9.) ○국선대리인 선임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제 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 중	조치중

연번	부대의견	이행내역	조치 결과
14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 추진’ 중 대국민 홍보비 예산 1억 4,000만원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세부사업으로 통합·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부대의견에 포함된 홍보비(140백만원)는 ‘행정심판운영’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의결됨 ○원스톱 온라인행정심판사이트를 개통(‘25.6.) 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라디오, 옥외광고, 유튜브 광고로 전액 집행 완료	조치 완료

3.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 분석 및 개선 노력 필요

1)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³⁾ 등에 따라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청렴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2024년에는 71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청렴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하였고, 각급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청렴도 평가 주관 기관임에도 정작 평가에 빠져 있으므로 청렴도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아⁴⁾ 자체 청렴수준 측정 방안 마련 후 2023년부터 자체 청렴수준을 측정하고 있음⁵⁾.

○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의 종합청렴도는 88.3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렴체감도가 전년 대비 5.9점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외부체감도가 3.9점 하락하고 내부체감도가 10.7점 하락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

(단위: 점)

연도	종합	청렴체감도(60%)			청렴 노력도 (40%)	부패실태
		합계	외부 (70%)	내부 (30%)		
2024(A)	88.3	84.3	90.5	69.6	94.3	발생사건 없음
2023(B)	90.4	90.2	94.4	80.3	90.9	발생사건 없음
비교(A)-(B)	-2.1	-5.9	-3.9	-10.7	3.4	-

* 2025년도 자체 청렴수준 측정 영역은 현재 진행중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4)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시정)

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일반연구비로 '권익행정 만족도 등 조사'와 함께 일괄 발주

- 외부체감도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고, 갑질행위 및 업무 처리기준·절차 공개 항목은 공공기관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외부체감도 항목별 결과 비교〉

(단위: 점)

연도	부정청탁	사익추구	특혜제공	절차위반	소극행정	갑질행위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2024 (A)	93.2	94.4	92.2	90.9	88.5	91.1	83.5
2023 (B)	97.6	97.7	96.3	96.2	90.0	95.7	87.5
비교 (A-B)	-4.4	-3.3	-4.1	-5.3	-1.5	-4.6	-4.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 내부체감도는 외부체감도에 비해 점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하락폭이 큰 항목은 부당지시(-15.9점), 갑질행위(-13.8점), 특혜제공(-12.8점) 등의 순이었고, 부당지시와 갑질행위 항목은 공공기관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내부체감도 항목별 결과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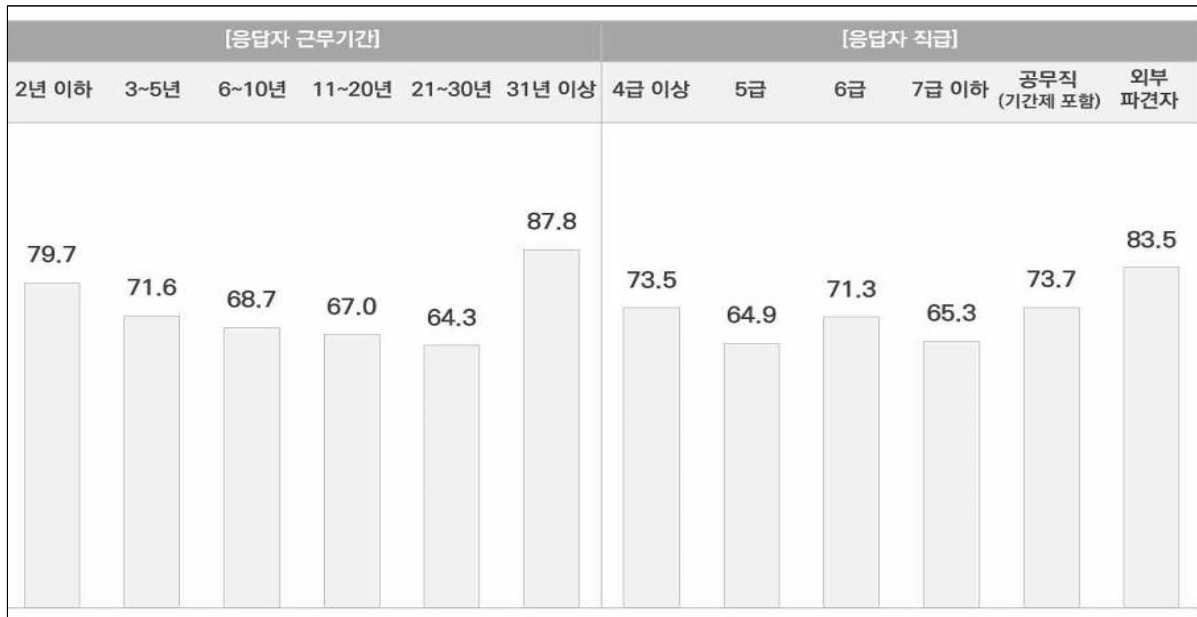
연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부당지시	사익추구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갑질행위
2024 (A)	58.2	69.0	63.9	78.6	61.9	75.9	59.3
2023 (B)	71.0	81.5	79.8	89.7	73.6	82.8	73.1
비교 (A-B)	-12.8	-12.5	-15.9	-11.1	-11.7	-6.9	-13.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 응답자 특성별 내부체감도를 살펴보면, 근무기간 21~30년, 5급 직원의 체감 청렴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내부 직원에 비해 외부 파견자의 체감 청렴수준이 월등히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음.

〈응답자 특성별 내부체감 청렴수준〉

(단위: 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수준 측정 결과 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고 청렴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청렴수준이 요구되는 만큼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 기관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개선하기 위한 자율적 반부패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자체 청렴수준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청렴컨설팅 제도와 같이 원인과 문제점 분석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세입]

1. 과태료⁶⁾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과태료’는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및 청탁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세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0만원(△33.3%) 감소한 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⁷⁾,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⁸⁾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이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2026년 예산안에는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6) 세부사업: 과태료(56-563)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000만원을 계상함.

〈2026년도 과태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태료	73	180	120	△60	△3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실제 수납 가능 범위 내의 예산 편성 필요

□ 권익위는 2020년 3,000만원부터 2025년 1억 8,000만원까지 과태료의 예산액을 매년 증액해오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년보다 6,000만원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함.

○ 권익위는 2025년 예산인 부패/공익/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각 6,000만원에 대해, 각 유형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6,000만원→4,000만원), 이는 최근 징수결정액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은 2023년 1억 2,800만원, 2024년 9,3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2,000만원임.

□ 그러나,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살펴보면, 금액상 괴리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징수결정액은 2022년 2억 6,000만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2024년은 9,300만원, 2025년은 10월 기준 2,000만원에 불과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예산액 대비 수납률’보다 훨씬 저조한데, 최근 5년간 수납률은 최고 78.5%(2024년)에 불과하고, 2024년을 제외한 연도에는 모두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은 3,960만원에 불과함.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B)	이행강제금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2020	30	147	37	123.3	25.2	110
2021	60	200	40	66.7	20.0	160
2022	100	260	110	110.0	42.3	150
2023	110	128	△62	△56.4	△48.4	190
2024	160	93	73	45.6	78.5	20
2025.10	180	20	-	-	-	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2025년 8월말 기준 과태료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2020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97	7	7.2	9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50	30	60	20
2021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180	20	11.1	16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20	20	100.0	-
2022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170	20	11.8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90	90	100.0	-
2023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150	-	-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32	△62	△100.0	30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2024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53	43	81.1	1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30	30	100.0	-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2025. 10월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10	-	-	1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	-	-	-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 전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차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① 이행강제금 수납 5건(대법원 승소 1건), ②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16건(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3건 포함)으로, 징수결정 21건 중 76.1%가 취소되었음.

〈2022년~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제2분과46호) 2024.3.4.
2	2020-12-08	-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3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4	2021-02-09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결정 2022.9.19.
5	2021-07-20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2.9.19.
6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3.4.
7	2022-02-28	20백만원	20백만원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8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 2024.3.4.
9	2022-11-29	20백만원	20백만원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10	2022-11-29	-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1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2022.2.28. 1차 부과하여 2022.6.30.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2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2022.11.29. 2차 부과하여 2023.1.13.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3	2023-12-22 (반환일자)	-	△22백만원	-	2019.7.17. 부과하여 2019.9.29.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원회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2023.10.12. 선고)
14	2024-03-04	10백만원	8백만원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1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2024.3.22.
15	2024-03-04	5백만원	5백만원	-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2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결정 2024.5.13. 2024.6.17. 수납
16	2024-07-02	10백만원	-	1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17	2022-04-11	20백만원	20백만원	-	2022.7.26. 수납
18	2022-05-20	20백만원	20백만원	-	2022.6.30. 수납
19	2022-07-25	30백만원	30백만원	-	2022.8.31. 수납
20	2023-12-18	30백만원	30백만원	-	2024.1.31. 수납
21	2022-11-29	30백만원	30백만원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2024.10.10. 대법원 위원회 승소 2024.12.16. 수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권익위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하거나 소송 패소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전년도 미수납액이 포함되어 실제 수납액보다 과대 계상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26년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액은 1억 1,000만원,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이 3,960만원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세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¹⁰⁾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중 총액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00만원(△1.8%) 감소한 44억 5,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4,189	4,533	4,455	△78	△1.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의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하려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10) 세부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그런데,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세출 예산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¹¹⁾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중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서 기관 전체 및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본행정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집행함.

□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경상경비적 예산이 아니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요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을 각각 관련 주요사업비에 편성하고 있음.

11)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인건비는 세부사업 코드 100~199, 기본경비는 세부사업 코드 200~299, 주요사업비는 세부사업 코드 300~799를 부여하여 구분함.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8 (35만원×23회)	8 (35만원×23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36-363)	4 (40만원×10회)	4 (40만원×10회)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 - 364)	14 (35만원×40회)	24 (50만원×48회)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7 (35만원×20회)	7 (35만원×20회)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8 (40만원×20회)	8 (40만원×20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세출예산은 편성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¹²⁾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운용의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경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을 관련 주요 사업 경비로 이관 편성하여야 할 것임¹³⁾.

1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3)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를 편성한 것을 시정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편성함.

(2)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의 통합 편성 · 집행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하던 신고자 보·포상금을 2025년 예산안부터 통합 편성¹⁴⁾하였는데,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도 연도별 자문 소요의 편차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 부족 또는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제도 확대 적용 및 활성화 노력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예산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의 집행을 살펴보면, 사업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제도¹⁵⁾’를 타 사업에 도입하는 등 제도의 일원화 및 확대가 예상되는 바, 예산 통합 운용을 통한 효율적 집행 및 원활한 제도 확대가 요구됨.

14) 사업별 부족, 불용 발생으로 매년 자체 전용이 발생함에 따라 보·포상금 비목을 일원화

15) 2024. 2. 6.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내부 신고자지원을 위한 조사 및 쟁송절차, 보호신청 등에 소요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제도’가 도입됨.

〈연도별 · 사업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2023			2024			2025.10월 현재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1111-250)	8,050	3,550	44.1	8,050	2,300	28.6	8,050	4,900	60.9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36-363)	4,000	3,100	77.5	4,000	5,500	137.5	4,000	1,550	38.7
신고자보호보상및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 - 364)	12,600	12,050	95.6	12,600	9,500	75.4	14,000	5,950	42.5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7,000	1,000	14.3	7,000	3,000	42.9	7,000	700	10.0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8,000	3,400	42.5	8,000	3,600	45.0	8,000	1,800	22.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보호보상국 신설과 관련하여 수시직제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직제 심사 완료 후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을 통합 편성¹⁶⁾하고, 우선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를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사업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별로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의 부족 또는 불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집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보·포상금의 경우 동일한 부서 소관으로 통합 편성할 수 있었으나, 비실명 대리신고는 각 사업별 신고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 바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2.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¹⁷⁾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는 부패·공익·청탁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렴포털’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¹⁸⁾하여 2026년 예산안은 12억 7,4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	-	-	1,274	1,274	순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은 범정부 반부패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 1,200여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음.

17) 세부사업: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1132-323)

18) 행정정보시스템운영(1132-320) 사업의 권익행정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시스템이고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은 범정부 시스템으로, 시스템 성격 및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가 달라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을 위해 분리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청렴포털 연도별 이용기관 확대 현황〉

(단위: 개)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9월 현재
신고 가능 기관 수	349	912	928	1,225	1,2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청렴포털 기능 개선 및 이용자 친화적 기능 도입 필요

- 청렴포털의 2026년 예산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지관리비에 12억 6,400만원, 운영경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 행정정보 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내에 편성되었던 규모와 동일함.

〈2026년도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물량·단가	금액
부패방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개발SW 유지관리	(개발비)9,656백만원×(요율) 9.34%	902
	· 상용SW 유지관리	(도입비)2,104백만원×(요율) 10.41%	219
	· 헬프데스크 운영	(IT지원기술자)2명×5.95백만원×12월	143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 공공요금	1식(SMS등 3종)×6.5백만원	6.5
	· 일반수용비	1식(평가수당 등2종)×3.5백만원	3.5
합계			1,27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매년 12억 6,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 대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
하여 기능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렴포털의 기능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은 2023년부터 실시¹⁹⁾되었는데
202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직원, 2024년에는 공공기관 추가,
2025년에는 대국민 추가 의견수렴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공공기관 이용자가 제시한 개선의견 중 1건만이 반영되
었고, 대부분 예산 투입 등의 사유로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²⁰⁾되어 개선
되지 못하고 있음. 2025년의 개선의견에는 2024년 제시한 의견에 대해
피드백 없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의견을 제시²¹⁾한 내용도 있음.

□ 또한, 타 범정부, 대국민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 친화적 기능이
미흡²²⁾하므로 원격지원, 챗봇 서비스 운영 및 온라인 매뉴얼 등을 도
입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격지원, 챗봇 서비스 등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
으로 2027년 고도화 사업 진행 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19)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는 세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간이어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나, 2018년 시스템 구축 이후 2019년 공공기관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표준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3월부터 공공기관에 배포하였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것임.

20) 온나라 시스템 연계 기능,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수령 내역 조회 기능 등

21) 신고자에게 부패, 공익신고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

22) 범정부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원격지원, 챗봇 서비스,
동영상 매뉴얼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기능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²³⁾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필요

□ 청렴포털 이용자의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헬프데스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청렴포털 시스템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 20%에 불과하고 공공기관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이용자가 청렴포털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청렴포털 연도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9월 현재
국민	884,357	1,534,769	954,055	662,394	745,575
공공기관	3,002	11,593	16,175	20,876	24,787

* 대국민 이용자는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방문자 수로 집계, 공공기관 이용자는 누적 회원가입 기준으로 집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하위 4대 시스템 유형별 헬프데스크 이용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대국민	위원회	공공기관	심의의결	기타	합계
2022	실적	731	198	5,394	6	4	6,333
	비율	11.54	3.13	85.17	0.09	0.06	100
2023	실적	1,509	194	6,896	20	-	8,619
	비율	17.51	2.25	80.01	0.23	-	100
2024	실적	1,525	200	6,571	15	2	8,313
	비율	18.34	2.41	79.04	0.18	0.02	100
2025.9월 현재	실적	1,033	135	4,958	17	-	6,143
	비율	16.82	2.20	80.71	0.28	-	1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3) “공공기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 또한, 매년 연말 실시하는 청렴포털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국민 만족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만족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청렴포털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연도	2021	2022	2023	2024
대국민	77.9	82.4	82.7	86.4
공공기관	82.7	78.3	79.9	78.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구체적으로 2024년 만족도 조사에서 공공기관 사용자가 제시한 개선의견에는 청렴포털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요청, 2023년 만족도 조사 시에는 청렴포털 이용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 실시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음.

□ 그런데, 공공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연 1회, 2시간 가량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에 그쳤음²⁴⁾. 온라인 교육은 영상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여 홈페이지 내 동영상 교육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면 교육이 없어 공공기관 이용자들은 헬프데스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

24) 공공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오프라인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보호보상·공공재정·취업제한 등 권역별 통합 설명회에서 15분~20분 정도 청렴포털 소개 시간이 포함된 바 있음.

〈공공기관 청렴포털 연도별 온라인 교육 현황〉

연도	일시	방법	참석자
2023	7. 25.(화) 14:00~15:40	온라인 교육 (ZOOM 이용)	공공기관 신고처리 담당자 등 318명
	8. 29.(화) 14:00~15:40		공공기관 신고처리 담당자 등 110명
2024	6. 17.(월) 14:00~16:00		공공기관 청렴포털 기관운영자 등 509명
2025	6. 23.(월) 14:00~16:00		공공기관 청렴포털 기관운영자 등 435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을 이용한 2024년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5.3% 급증한 21,659건으로 역대 최대이고, 공공기관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이므로, 시스템 이용자 교육 강화를 통한 각급 공공기관의 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청렴포털 신고 접수 건수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9월
국민권익위원회	11,336	10,786	12,346	10,859
공공기관	6,422	7,998	9,313	7,807
합 계	17,758	18,784	21,659	18,66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은 1,200여개 기관이 신고처리 외에
도 실태조사, 청렴도평가,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이용자 교육부터는 온라인으로 영상 녹화를 진행하여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고, 온라인(영상) 도움말·FAQ 제공, 문의게시판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의 운영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수행 업무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종합상담창구운영²⁵⁾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은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 세종)와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원(7.9%) 증가한 102억 8,3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콜110운영’ 사업은 국민이 정부민원을 단일번호로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 대표콜센터를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원(8.1%) 증가한 100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종합상담창구운영	11,129	9,526	9,526	10,283	757	7.9
- 국민콜110 운영	10,967	9,330	9,330	10,087	757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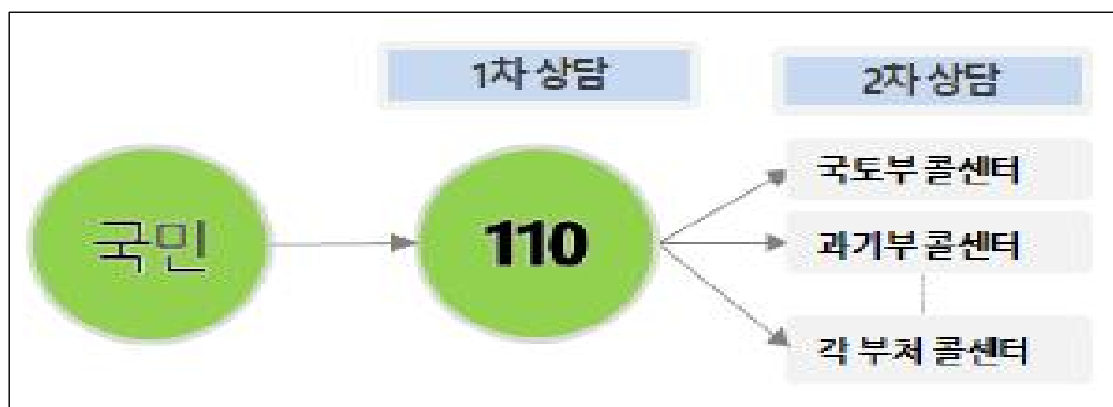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5) 세부사업: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2) 검토의견: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상담인력 확보 필요

- 국민콜110은 정부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이 단일번호 110번을 통하여 정부 업무와 관련된 문의·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6개 부처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정부 관련 일반상담 서비스 및 대표번호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2018년),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업무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이상 2014년), 인사혁신처(2015년)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²⁶⁾ 교육부(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외교부(이상 2015년),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이상 2016년)의 업무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는 대표번호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²⁷⁾

〈110대표번호 연계사업 민원상담 흐름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6)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혁신처 이상 3개 부처는 별도로 부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27) 대표번호 연계사업이란 부처 민원에 대한 문의를 110번으로 한 경우, 1차적으로 110콜센터에서 상담하고, 추가적인 상담(2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콜센터 번호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그런데, 국민콜110의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인입콜(국민콜110에서 접수한 상담콜), 응대콜, 일평균 인입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응대콜 중 20초 내에 상담사와 연결된 통화 비율을 나타내는 서비스레벨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4년에는 그 수치가 크게 하락하여 80% 이하를 기록하였음.

○ 응대율과 서비스레벨의 격차 또한, 2022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연결 편의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국민콜110의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려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냄.

〈2021년~2024년 국민콜110 상담 현황〉

구분	인입콜	응대콜	일평균 인입콜*	응대율 (A)	서비스레벨** (B)	차이 (A-B)
2021년	3,097,391건	2,851,423건	11,346건	92.1%	80.9%	11.2%p
2022년	2,665,492건	2,482,728건	9,826건	93.1%	85.0%	8.1%p
2023년	2,552,476건	2,393,661건	9,428건	93.8%	84.5%	9.3%p
2024년	2,439,681건	2,156,801건	9,178건	88.4%	77.5%	10.9%p

* 일평균 인입콜 : 평일 인입건/평일 근무일수

** 서비스레벨: 응대콜 중 20초 내에 상담사와 연결된 통화의 비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콜센터 상담사의 인력 부족 및 충원 지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110콜센터 상담사는 2021년 공무원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휴·퇴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2021년~2024년 콜센터 상담사 휴·퇴직자 수〉

(단위: 명, 연말 기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휴·퇴직자 수	25	22	22	32
휴직자	14	7	14	12
퇴직자 (3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11	15	8	2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중도퇴직 인원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휴직·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부족한 상담사 인원이 적시에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2년~2024년 상담사 중도퇴직 인원 및 이로 인한 예산 불용액〉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중도퇴직 인원 수	18	10	24
예산 불용액	245,188	195,719	435,8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는 재정적 측면에서, 매년 상담사 인건비(상용임금) 예산은 정원(228명)을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집행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예산 집행상 비효율을 유발하게 됨.

〈2021년~2024년 콜센터 상담사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6,838	7,014	7,202	7,401
집행액(B)	6,343	6,520	6,591	6,785
차이(A-B)	495	494	611	61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상담사 인력 확보 문제는 국민콜110을 이용하는 국민이 상담사와의 신속한 연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국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게 됨.
- 국민콜110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상담사 연결 신속성과 관련된 항목의 조사결과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개선사항으로 ‘상담원 연결’ 관련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임.

〈2022년~2024년 국민콜110 만족도 조사(연결 신속성) 결과〉

(단위: %, 점)

구 분	사 례 수	‘상담원과 신속하게 연결되었다’ 항목					항목 서비스만족도 점수		
		매우 그렇다	대 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대 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사항목 중		
							최고 점수	최저 점수	
2022년	(2012)	63.7	18.7	11.0	3.7	2.8	84.2	91.3	84.2
2023년	(2019)	48.3	21.0	19.4	6.9	4.4	75.5	85.2	75.5
2024년	(2000)	(해당 설문항목 삭제)						90.6	85.8

〈2022년~2024년 국민콜110 만족도 조사(서비스 관련 개선 및 제언점) 결과〉

구 분	사 례 수	응답내용*	빈도수
2022년	(2012)	전화 연결이 어렵다	126
		상담원 연결이 신속하지 않다 /대기시간이 길다	48
		상담원이 친절하지 않다.	19
2023년	(2019)	상담원과 연결이 신속했으면	91
		상담원과 연결이 잘 됐으면	67
		대기시간이 짧았으면	28
2024년	(2000)	신속한 상담 연결/연결이 너무 오래 걸린다	66
		원활한 상담 연결/연결이 어렵다	49
		상담원의 친절한 태도 필요	15

* 서비스 관련 개선 및 제언점에 대하여 응답한 의견 중 빈도수 1위~3위까지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의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상담 인력 중도 퇴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상담 인원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고충민원조사활동²⁸⁾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9,900만원(18.7%) 증가한 18억 9,9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이(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만원(△27.6%) 감소한 1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고충민원조사활동	1,361	1,600	1,600	1,899	299	18.7
- 특이민원 중점관리	-	145	145	105	△40	△27.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8)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2) 검토의견: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사업의 효과성 재검토 및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이민원(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25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에는
- ① 특이민원 시민상담관(특이민원 상담요원) 운영, ②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교육·컨설팅 실시, ③ 특이민원 피해 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으로 계획 되었음.

〈2025년도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계획〉

구 분	내 용	편성내역
특이민원 중점관리(신규)	-	1억 4,500만원
① 시민상담관 운영	분야별 전문가·민원처리 베테랑을 활용하여 특이민원 상담·설득·대안 제시 등 수행	5,000만원 (25만원×200건)
②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교육·컨설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민원처리 공무원 대상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실시	4,500만원 (450만원×10회)
③ 정책연구용역	특이민원 피해 현황 실태조사·분석을 통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하는 연구 추진	5,000만원 (5,000만원×1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 중 2025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예산을 감액하고, 민원 업무 현장 방문, 워크숍

교육 등을 위한 출장 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시민
상담관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의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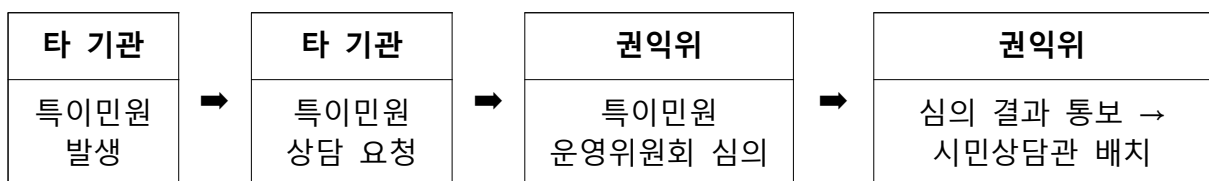
〈2026년도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구 분	2025년	2026년
시민상담관 수당	5,000만원	5,000만원
워크숍 등 개최	4,500만원	4,500만원
정책연구용역 수행	5,000만원	-
현장 방문 등 출장 여비	-	1,000만원
계	1억 4,500만원	1억 5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 중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사업은 타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특이민원 상담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
상담관을 배치하고, 시민상담관은 타 기관의 특이민원의 상담·설득
·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민상담관이 각 기관
에서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음.

〈2025년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방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시민상담관 20명을 위촉하였으며, 9월 말 기준 현재 총 110건의 시민상담관 활동이 이루어졌음.

□ 그런데, 동 사업의 현재까지 활동 실적을 보면, 시민상담관이 특이민원을 상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던 사업계획과 달리, 시민상담관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컨설팅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시민상담관 활동 실적〉

구분		활동 실적 건수
대상	내용	
對 공직자	계	109건
	교육	72건
	상담	37건
對 민원인	계	1건
	상담	1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는, 최초 특이민원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던 동 사업의 목적·내용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상담관의 활동 내용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만 집중하여 운영된다면,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특이민원 대응 지원” 효과 달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모집 공고상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활동 내용〉

- (특별민원 대응 지원) 위원회 및 각급 기관 특별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민원 청취 및 설득·대안 제시, 관련 법령 설명 등 특별민원 대응 지원
 - ※ 상담요원이 특별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님
- (특별민원 대응 노하우 교육·컨설팅) 각급 기관의 특별민원 대응 요청에 따라 요청 기관을 방문하여 특별민원 대응 노하우 등 교육·컨설팅 지원
- (피해공무원 상담 및 법적 대응) 특별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고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 지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운영 방식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²⁹⁾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의 내역사업인 ‘청렴컨설팅 운영’ 사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³⁰⁾에 따라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3,001	2,984	2,741	△243	△8.1
- 청렴컨설팅 운영	41	60	60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 청렴컨설팅 방법은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개 멘토기관(청렴도 1~2등급 기관)과 2~3개 멘티기관(청렴도 4~5등급 기관)이 그룹을 이루어 멘토링을 진행하고 멘토·자문위원·위원회가 멘티기관의 청렴도

29) 세부사업: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14개 그룹(28개 멘티 기관)을 선정·실시함.

- 2023년부터는 컨설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멘티 기관 중 일부를 별도 선정하여 ‘심층진단·분석³¹⁾’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에는 1,800만원³²⁾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7개 기관을 선정·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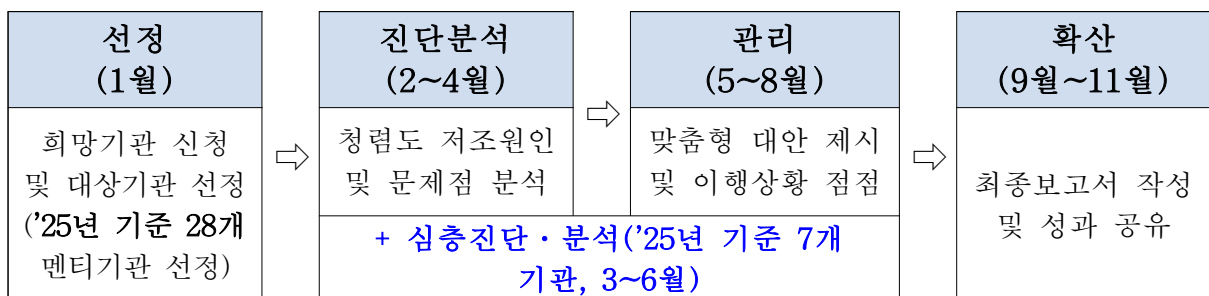
〈연도별 청렴컨설팅 운영 내역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청렴컨설팅 운영	18	42	42	60	60
-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18	18	18	18	18
- 심층진단·분석 (일반연구비)	-	24	24	42	4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흐름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1) 기관 내·외부의 고착화된 부패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하여 조직 내부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

32) (‘24) 5개 기관 × 4.8백만원 → (‘25) 7개 기관 × 6백만원

2) 검토의견

(1) 청렴컨설팅 효과의 지속성과 내재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청렴컨설팅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낮은 점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성은 컨설팅 기관의 종합청렴도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컨설팅을 받은 기관들은 컨설팅 실시 당해연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보인 기관이 다수였으나, 1~2년 경과 후에는 일부 기관에서 청렴도 등급이 초기 미흡 등급(4~5등급)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됨.

〈연도별 청렴컨설팅 실시기관(멘티)의 종합청렴도 변화 분석〉

연도	컨설팅 대상기관	컨설팅 당해연도	1년 경과	2년 경과
2021년	22개	상승 17개 동일 3개 하락 2개	상승 15개 <u>동일 7개</u> <u>하락 없음</u>	상승 12개 <u>동일 8개</u> <u>하락 1개</u> *평가제외 1개
2022년	23개	상승 17개 동일 6개 하락 없음	상승 14개 <u>동일 8개</u> <u>하락 1개</u>	상승 13개 <u>동일 9개</u> <u>하락 1개</u>
2023년	24개	상승 13개 동일 11개 하락 없음	상승 16개 <u>동일 7개</u> <u>하락 없음</u> *평가제외 1개	25년 평가 진행중
2024년	24개	상승 18개 동일 5개 하락 1개	25년 평가 진행중	

* 청렴도 변화 분석 기준: 컨설팅 이전 연도 등급과 비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이는 컨설팅 효과가 단기간에는 긍정적이거나, 지속성과 내재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므로³³⁾, 컨설팅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컨설팅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상 기관의 조직 문화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후속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3)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유사 지적이 있었음.

(2) 심층진단·분석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02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심층진단·분석’의 목적은 청렴컨설팅의 효과성 제고 및 청렴도의 장기적인 상승³⁴⁾에 있으므로, 청렴컨설팅만을 받은 기관과 비교하여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및 2024년의 컨설팅 실시 기관 중 각각 4개 기관이 2등급 이상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우수기관(2등급)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모두 컨설팅만을 실시한 기관으로, 심층진단·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개선된 사례는 없음.

〈청렴컨설팅 실시기관 및 심층진단·분석 실시기관 청렴도 개선 비교〉

연도	컨설팅 대상 (심층진단·분석 대상)	컨설팅만 실시한 기관	컨설팅+심층진단·분석 실시 기관
2023년	24개 (4개)	20개 기관 중 <u>4개 기관</u> <u>종합청렴도 우수기관</u> 으로 개선	4개 기관 중 <u>종합청렴도 우수기관</u> <u>없음</u>
2024년	24개 (5개)	19개 기관 중 <u>4개 기관</u> <u>종합청렴도 우수기관</u> 으로 개선	5개 기관 중 <u>종합청렴도 우수기관</u> <u>없음</u>

*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영역은 현재 진행중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심층진단·분석은 시행한 지 3년차로 장기적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³⁵⁾가 있으나 아직 뚜렷한 차별적 효과를

34)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 심층진단·분석’ 영역 제안요청서

35) 현재 기준 2023년 실시기관의 2024년 청렴도 상승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컨설팅만 실시한 기관은 상승 13개, 동일 7개 / 심층진단·분석 실시 기관은 상승 3개, 평가제외 1개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기존 컨설팅 예산의 2배 이상을 투입하여 소수 기관('25년 기준 7개)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청렴컨설팅 수용률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심층진단·분석 예산을 일반 컨설팅으로 이관하여 컨설팅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렴컨설팅 신청기관 대비 수용률〉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 그룹 수	24개 그룹	32개 그룹	35개 그룹	39개 그룹
선정 그룹 수	11개 그룹	12개 그룹	12개 그룹	14개 그룹
수용률(선정비율)	45.8%	37.5%	34.3%	35.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층진단·분석’ 사업이 일반 컨설팅 사업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6. 청렴교육및의식확산³⁶⁾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600만원(23.1%) 증가한 29억 6,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11	2,411	2,967	556	2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계획의 현실화 및 구체화 필요

- 내역사업인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은 청렴연수원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150%) 증가한 2억원이 편성되었음.

36)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내내역사업인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에 일반연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청렴연수원은 단기교육과정(3일 이하) 위주로 운영³⁷⁾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분야를 망라하고, 학습자에 맞춘 장기적·전문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임.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예산안 편성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일반연구비(260-01): 8,000만원 가. 청렴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3,500만원×2식 =7,000만원 나. 사이버코스웨어 수정·보완: 1,000만원×1식 =1,0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2억원(+1억 2,000만원) 가. 청렴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3,500만원×1식 =3,500만원(△3,500만원) 나. 사이버코스웨어 수정·보완: 1,500만원×1식 =1,500만원(+500만원) 다.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1억 5,000만원(신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계획(안)〉

구분	내용
장기 교육체계 설계	· 현행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심화학습이 가능한 장기 교육모델(2~4주) 및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 - 공직 입문단계의 신규 공직자 및 일선 현장의 민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내재화 및 민원 처리·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과정 도입 및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교수제도 개편	· AI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청렴교육 강사 양성체계 및 질적 관리방안 연구 등을 통해 청렴교육 교수제도 개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7) '25년 연수원 교육계획 중 원내 집합교육(84회) 중 3일 이하 교육은 약 94%(79회)

□ 장기 교육의 주 대상으로 계획 중인 신규 공직자에 대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5급 신입관리자과정은 16주(집합 13주, 온라인 3주), 7급 신규자과정은 4주(집합 3주, 온라인 1주)로, 공직가치, 국정비전, 직무·정책기획(직무·전문성), 공직리더십(성장 잠재력) 등의 교과가 편성되어 있음. 상기한 교육 과정에 비추어 공직가치 중의 하나인 청렴에 대한 교육과정을 2주~4주라는 장기간 교육 과정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직자 등이 그러한 장기간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교육 체계 설계시 교육 대상 수요 분석, 참여 가능성 및 교육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권익위는 ‘장기 교육체계 설계’ 외에도 ‘청렴교육 교수제도 개편’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가지 내용을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타 부처 사례를 보면 교육과정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1억 5,000만원 수준임. 다른 교육과정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에 비추어 2026년 예산안은 두 가지 장기 교육과정을 완성도 있게 연구·개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과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기관 교육과정 개발 예산 현황³⁸⁾〉

연도	부처·기관명	용역	예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1.5억원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체부 산하 기관)	문화다양성 전문인력(교원) 직무연수 커리큘럼 연구개발	1.9억원
2023년	대한체육회 (문체부 산하 기관)	2023년 스포츠인 종합 교육과정 교안 개발 용역	1.5억원
2024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계급별 교육훈련 표준화를 위한 표준교재 개발 사업	1억원
2025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식약처 산하 기관)	mRNA 백신 교육과정 개발 용역	1억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교육과정의 현실적 운영 가능성, 공직자 등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부실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8) 국민권익위원회는 교과목, 콘텐츠 개발 사례는 있으나,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례는 없음.

(2) 대학 청렴교육 예산 규모 조정 필요

□ 내역사업인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일반국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0만원(6.0%) 증가한 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교육보조원 인건비 등의 예산과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나뉘는데, 교육운영비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 8,000만원(△37.6%)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 3,000만원(△50.0%)을 감액하고, 청렴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2,784만원(190.2%)과 업무협의를 위한 사업추진비 200만원(40.0%)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운영비 편성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2025년 교육운영비: 3억 4,520만원	□ 2026년 교육운영비: 3억 6,504만원(+1,984만원)
○ 일반수용비(210-01): 6,720만원 가. 청렴교육 운영비: 420만원×16회=6,72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1억 9,504만원(+1억 2,784만원) 가. 청렴교육 운영비: 424만원×46회=1억 9,504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억 1,300만원 가.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 1억 300만원 나.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5,500만원×2식=1억 1,0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억 3,300만원(△8,000만원) 가.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 1억 300만원(전년동) 나.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3,000만원×1식=3,000만원(△8,000만원)
○ 사업추진비(240-01): 5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기관 업무협약 500만원	○ 사업추진비(240-01): 700만원(+2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기관 업무협약 7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6,0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교육콘텐츠 개발: 3,000만원×2식=6,0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3,000만원(△3,000만원) 가.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교육콘텐츠 개발: 3,000만원×1식=3,0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내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 확대를 위한 강사료 및 강사여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와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는 설명임.

○ 2025년 9월말 기준 21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은 정규교과 10개교, 청렴특강 20개교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함.

〈국민권익위원회 · 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현황〉

(‘25.9월말 기준)

연번	학교명	지역	체결일자	연번	학교명	지역	체결일자
1	청주교대	청주	’25.2.6.	12	충남대	대전	’25.6.18.
2	호서대	충남	’25.3.12.	13	숙명여대	서울	’25.6.19.
3	한국교원대	청주	’25.3.26.	14	대구대	대구	’25.6.27.
4	서원대	청주	’25.4.1.	15	동국대	서울	’25.7.9.
5	국립공주대	공주	’25.4.15.	16	대구경북과기원	경산	’25.7.17.
6	부산대	부산	’25.4.25.	17	이화여대	서울	’25.7.24.
7	전북대	전주	’25.5.7.	18	목원대	대전	’25.7.28.
8	청주대	청주	’25.5.8.	19	인천대	인천	’25.8.13.
9	한양대	서울	’25.5.9.	20	국립부경대	부산	’25.9.18.
10	광주과기원	광주	’25.5.23.	21	공군사관학교	청주	’25.9.22.
11	신성대	당진	’25.6.1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청렴교육 강화 예산 편성 내역〉

구분	개교	산출내역	산출내역
대학 청렴 정규교과 운영(일반수용비)	10	9,900만원	· 강사료 : 60.7만원×14차시×10개교 · 강사여비 : 10만원×14차시×10개교
대학협업 청렴특강 (일반수용비)	20	2,900만원	· 강사료 : 135만원×20개교 · 강사여비 : 10만원×20개교
간담회·업무 협의 등 (업무추진비)	30	200만원	· 대학 등 관계기관 협의: 10만원×20개교
총계		1억 3,0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대학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전사회적 청렴 문화 확산이라는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규교과 및 청렴특강 운영에 소요되는 외부 강사료 등을 전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21개 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내용을 보면 비용 부담에 관해 협의하도록 명시³⁹⁾되어 있고, 실제 '25년 정규교과를 운영 중인 대학 중 외부 강사 외 대학 자체 강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예산안은 정규교과 10개교 운영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5년 9월말 기준 정규교과 운영이 확정된 곳은 총 4개교(5회)에 불과함⁴⁰⁾.

〈2025년 대학 정규교과 운영 현황〉

학교명		집행(예산)액 (여비포함)			비고
		강사료	공연료	총계	
울산과학기술원	1학기 (8차시)	580천원 × 7회 = 4,059천원 (차시 당 2시간)	2,000천원 × 1회 (공연)	6,059천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1차시)
	2학기 (8차시)	714천원 × 7회 = 5,000천원 (차시 당 2시간)	1,000천원 × 1회 (공연)	6,000천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1차시)
한양대학교 (2학기, 15차시)		500천원 × 9회 = 4,500천원 (차시 당 1시간)	-	4,500천원	대학 자체 강사(2차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4차시)
전북대학교 (2학기, 15차시)		750천원 × 2회 = 1,500천원 (차시 당 3시간)	500천원 × 1회 (공연)	2,000천원	대학 자체 강사(13차시)
한국교원대학교 (2학기, 15차시)		500천원 × 13회 = 6,500천원 (차시 당 2시간)	1,500천원 × 2회 (명사특강, 공연)	9,500천원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9)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4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 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40)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1월 현재 정규교과 추가 개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임.

- 셋째, 동 내역사업의 교육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대학생, 청년 세대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것은 대상자별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⁴¹⁾.

〈교육 대상별 예산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교육 유형	대상	집행액		
		'23년	'24년	'25.9월
초등학생 청렴캠프	초등학생	58	44	34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초중고 학생	64	105	53
수능 이후 고3 청렴교육	고등학생	12	5	-
대학협업 청렴특강	대학생	4	6	20
대학 정규교과 운영		-	-	6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청년 세대	46	59	41
청년인턴 청렴교육		-	7	10
퇴직공직자 활용 찾아가는 청렴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24	미운영*	

*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이 운영되었으나('17년~), '23년 사업 중단으로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현재는 미운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안은 실제 운영 실적 및 비용 부담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청렴교육의 수혜 계층 전반에 걸쳐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41)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 지원이 가능한 초중고와 달리 대학 청렴교육의 경우 직접 지원이 필요하기에 예산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함.

(3) 학술지 발간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내역사업인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학술지 발간을 통해 위원회 업무와 새로운 반부패·권익구제 관련 이론 등 공유 및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0만원(25%) 증가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술지 발간을 전년 대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편성⁴²⁾하였음에도, 편집비, 원고료 등에 440만원, 편집·윤리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포상금 신설에 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예산 편성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2025년 예산: 2,800만원 ※ 2회 발간 기준 ○ 일반수용비(210-01): 2,800만원 가. 학술지 발간: 1,980만원 · 편집비: 65만원×2회=130만원 · 원고료: 5만원×20면×9편×2식=1,800만원 · e-book 제작: 50만원×1회=50만원 나. 편집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820만원 · 안전검토수당: 5만원×7인×9편×2회=630만원 · 편집수당: 10만원×7인×2회=140만원 · 연구윤리위원수당: 10만원×5인×1회=50만원	□ 2026년 예산: 3,500만원(+700만원) ※ 1회 발간 기준 ○ 일반수용비(210-01): 3,440만원(+640만원) 가. 학술지 발간: 2,420만원(+440만원) · 편집비: 360만원×1회=360만원 · 원고료: 8만원×25면×10편=2,000만원 · e-book 제작: 60만원×1회=60만원 나. 편집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020만원(+200만원) · 안전검토수당: 5만원×14인×10편=700만원 · 편집수당: 20만원×12인=240만원 · 연구윤리위원수당: 20만원×4인=80만원 ○ 포상금(310-13): 60만원(+60만원) 가. 우수 논문 포상금: 30만×2회=60만원(+6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2) 2024년과 2025년 모두 2회 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재는 1회 발간(2025년은 10월 31일 발간)

□ 그런데, 타 기관의 학술지 예산 단가를 살펴보면, 법제처의 「법제」, 감사원의 「감사논집」, 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 등과 비교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편성한 원고료, 편집수당, 연구윤리위원수당 등의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음.

〈타 기관 학술지 예산 편성 단가〉

구분	학술지명	원고료	논문 심사료 등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	권익	200만원 (8만원×25면×10편=2,000만원)	-안건검토수당: 5만원 (5만원×14인×10편=700만원) -편집수당: 20만원 (20만원×12인=240만원) -연구윤리위원수당: 20만원 (20만원×4인=80만원)	30만원 (30만원×2인=60만원)
법제처	법제	100만원 (5만원×20면×8편×4회=3,200만원)	-안건검토수당: 5만원 (5만원×5인×8편×4회=800만원) -편집수당: 10만원 (10만원×7인×4회=280만원) -연구윤리위원수당: 10만원 (10만원×10인×1회=100만원)	-
감사원	감사논집	100만원 100만원×9편=900만원	-논문 심사료: 10만원 10만원×50편=500만원 -편집위원회 자문료: 20만원 20만원×10인×3회=600만원	-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50만원 (기획논문 외부 저자 2인 한정, 그 외 원고료 없음.)	-논문 심사료: 5만원 (동일위원 재심사료 2만원) -편집위원회 자문료: 20만원 (서면 10만원)	-

(자료: 각 기관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처의 「법제」 등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로, 인지도가 높아 투고가 많은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은 '24년 창간된 미등재 신생 학술지이므로 투고 동기가 낮아 우수 논문 투고를 위한 유인이 필요하므로 원고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설명임⁴³⁾.

□ 그러나, 당초 2회 발간 계획에서 1회 발간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로 투고 논문 증가('24년 16편→'25년 21편) 추세 등으로 운영 여건상 연 1회만 발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미 계획보다 많은 논문이 투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보전금(310목) 공통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포상금 관련 공통집행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6)

□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지 창간 2년차임을 고려하여 발간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기보다 타 기관의 규모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43)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논집」의 경우 2019년 한국연구재단 등재 전 원고료는 200만원 수준이었다는 설명임.

7.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⁴⁴⁾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신고제도 교육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600만원 (△9.2%) 감소한 49억 9,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4,175	5,500	4,994	△506	△9.2
－ 신고자 보·포상금 등	4,104	5,425	4,875	△550	△10.1
－ 제도 운영경비 등	56	60	84	24	40.0
－ 공익신고제도 교육	15	15	35	20	133.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①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근거 마련 필요

44) 세부사업: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의 내역사업인 ‘제도 운영경비 등’ 사업은 합리적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자문 사례금 지급, 간담회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00만원(40.0%) 증가한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도 운영경비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제도 운영경비 등	56	60	84	24	40.0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30	30	-	-
-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	14	14	순증
- 보호보상제도 운영 지원		19	29	10	
-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사업추진비		11	11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 중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내내역사업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중요 보호사건을 심의할 민관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안전검토 사례금, 회의 운영경비가 신규 편성되었음.

〈보호심의위원회 2026년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산출 근거
▪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14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7명 × 4회 = 4.2
(안전검토 사례금)	300천원 × 7명 × 4회 = 8.4
(회의 운영경비)	350천원 × 4회 = 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심의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보호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이고, 사회적 이슈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보호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심의할 예정으로 분기별 1회, 연간 4회 기준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준하여 편성하였음.

〈보호심의위원회 개요〉

목 적	부패·공익신고 보호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
심의 내용	사회적 이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보호사건의 처리방향 등
구 성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민간단체, 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 분야 전문가 등 7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보호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⁴⁵⁾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국회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구성·운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규모 등 운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 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설치 근거 등 주요한 내용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나, 심의기관인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⁴⁶⁾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방안 및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규정 또는 보호심의위원회 운영지침(예규)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보호심의위원회는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신고자 및 관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보호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 설치 근거뿐 아니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289

② 보호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보호 절차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부패·공익신고 보호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보호의 적시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조치, 신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제도 전체를 포함한 평균 처리기간은 ('23년) 158.3일 → ('24년) 76.6일 → ('25년) 49.0일로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연도	접수 건수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계	인용	기각	각하	종결	
2021	287	252	45	37	20	150	100.9
2022	289	244	47	25	28	144	110.4
2023	297	358	27	39	39	253	158.3
2024	466	464	34	69	30	331	76.6
2025.9.	588	486	40	28	10	408	49.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원회 심의 절차로 인해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운영 방안 및 보호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자 보호 교육영상 제작 예산 적정 비목 편성 필요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의 내역사업인 ‘신고제도 교육’ 사업은 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133.3%) 증가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신고제도 교육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신고제도 교육	15	15	35	20	133.3
- 공공,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9	10	10	-	-
-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6	5	5	-	-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영상 제작	-	-	12	12	순증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제작	-	-	8	8	순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기관 담당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교육 영상·자료 제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 영상 제작에 1,200만원, 교육 자료 제작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신고자 보호 교육 관련 2026년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내역	산출 근거
일반수용비 (210-01목)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 영상 제작	12,000천원 × 1식 = 12
	▪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제작	10천원 × 4권역 × 200부 = 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 예산안 편성 지침〉

일반수용비(210-01목)	일반용역비(210-14목)
▪ <u>인쇄비</u> ,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u>영상자료 제작</u>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영상 제작 사업비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일반용역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